

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 조제목 “교통혼잡지역의 지정”을 “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의 지정 및 해제”로 하고, 동조 제1항 중 “영제32조의 규정에”를 “영 제15조의 규정에”로 하며, 동조 제2항 중 “교통혼잡지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”를 “혼잡통행료 부과지역 지정 및 해제할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다만, 토요일은 07:00~15:00시로 하며, 일요일과 공휴일은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”를 “다만, 토요일과 일요일, 공휴일은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”로 하고, 동조 제2항 중 “교통혼잡지역별료”를 “혼잡통행료 부과지역별료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조표

| 현 행 | 개 정(안) |
|---|---|
| 제3조 (교통혼잡지역의 지정) ①서울특별시 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영 제32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혼잡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. | 제3조 (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의 지정 및 해제) ① 영 제15조의 규정에 |
|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혼잡지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 | ②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지정 및 해제할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 |
| 제4조 (혼잡통행료 부과시간대) ① 혼잡통행료 부과시간대는 07:00~21:00시로 한다. 다만, 토요일은 07:00~15:00시로 하며, 일요일과 공휴일은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 | 제4조 (혼잡통행료 부과시간대) ① 다만, 토요일과 일요일, 공휴일은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 |
| ②시장은 지역적 특수성이나 교통혼잡시간대의 변화 등으로 혼잡통행료 부과시간대 조정이 필요가 있을 경우, 제1항의 시간범위 내에서 교통혼잡지역별료 혼잡통행료 부과시간대를 달리 정할 수 있다. | ② 혼잡통행료 부과지역별료 |
| ③생략 | ③(현행과 같음) |